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 implementation status;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tax administrations](#)

#### [OECD: 과세당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발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BEPS Action Plan 13 도입의 일환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에 따라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협정의 체결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자간 협정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는 2018년부터 교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최초 교환시기까지 약 1년이 남아있는 현재, EU 회원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포함하여 약 700개 이상의 조세관할구역간 자동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OECD는 향후 국가간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조약 또는 TIEA(Tax Information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23 May 2017

####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묵 상무이사](#)

(Tel: 02-2112-0982)

Exchange Agreement)를 통하여 특정 상대국과의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결된 자동정보교환협정 목록 및 국가별 국가별보고서 도입현황 등은 OECD 발표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대리 신고 (Surrogate Filing)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ndia: Brand development not separate international transaction](#)

#### **인도: 브랜드 개발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처분 기각**

인도 과세당국은 브랜드 개발을 별도의 국제거래로 간주하여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첸나이의 조세심판원(The Chennai Bench of the Income-tax Appellate Tribunal) 판결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한국기업의 전액출자 자회사인 납세자는 한국기업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인도 내에서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고, 납세자는 관계사 간 협약에 따라 생산되는 차량에 한국기업의 상표권 및 "배지(Badge)"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조사관은 현지 시장에서의 브랜드가치 구축을 별도 국제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납세자의 브랜드가치 상승을 근거로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납세자는 행정적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에서는 과세조정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자는 법적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브랜드가치 상승이 기술사용계약이 이미 체결된 국외특수관계법인 소유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것이며, 해당 계약은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체결되었기 때문에, 별도 국제거래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인도 과세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기각하였습니다.

### [Australia: ATO draft guidance on related-party financing arrangements](#)

#### **호주: 그룹 내 자금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Australian Tax Office(이하 "ATO")는 그룹 내 자금거래에 대한 실무적 지침인 PCG 2017/D4 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7 년 7 월 1 일부터 유효하며 유효시점 이후 신규 발생거래뿐만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던 거래에까지 적용됩니다.

ATO 는 자금거래 관련 다양한 요소들은 종합하여 거래별 과세위험을 수치화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고려요소로는 스프레드, 레버리지

수준, 이자보상배율, 담보 여부, 상환순위, 대여자 및 차입자 소재국가 통화, 국가간 조세규정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 Hybrid mismatching 및 기타 특수조건 뜻이 포함됩니다. KPMG의 경험에 따르면 AAA 등급의 자금대여에 대해서만 낮은 과세위험의 수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TO는 호주 납세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거래 관련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자금거래 관련 납세자들이 자료 제출 시 최초 과세위험 수치를 부여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한 다국적기업은 해당 기업의 호주법인과 본사 사이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지급 관련 ATO가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해당 항소심에서 ATO는 다국적기업의 호주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이자가 과다하다 판단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논리를 수용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ATO의 그룹 내 자금거래 관련 지침 발표 예고와 더불어 호주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 대한 과세위험 증가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 France: Country-by-country reporting notification and filing requirements

### 프랑스: 국가별보고서 제출자 신고 및 요건

국가별보고서 제출자 신고 요건은 법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다음 3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 프랑스 내 설립된 법인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국가별보고서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프랑스 내 설립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인 모회사의 소재국가가 국가별보고서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모회사 소재국가의 과세당국이 프랑스 과세당국과 자동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국가별보고서 관련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어떤 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지 명기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프랑스와 자동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은 최근 지명된 총리 승인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다국적기업의 법인이 프랑스 내 설립되었으며, 해당 법인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나, 프랑스와 자동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프랑스 내 법인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국외특수관계법인 상호와 소재주소를 법인세 신고 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제출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며, 전자식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ack to top](#)

---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